

## 협력기관 협약서

제1조(협약목적) 대구대학교 특수교육·재활과학연구소와 대구덕희학교는 상호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행동 중재가 요구되는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다중의 종합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연구 및 개발을 함께 수행하며 상호 간의 인적 교류, 학술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약내용) 양 기관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협력한다.

1. 대구대학교 특수교육·재활과학연구소는 대구덕희학교 학생들에게 행동중재 프로그램 적용을 위하여 자문을 지원하고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(단, 프로그램을 적용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).
2. 대구덕희학교는 학생들의 행동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긍정적인 행동변화를 위하여 대구대학교 특수교육·재활과학연구소에 자문 및 연수를 의뢰할 수 있다.
3. 양 기관은 서로 긴밀히 협력하며 보유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협력한다.

제3조(협약의 유효기간) 본 협약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, 협약기간은 2026년 2월말로 한다. 이후 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협약을 체결한다.

제4조(세부사항) 본 협약에 명시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기관의 협의에 의해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5조(권리·의무의 승계) 본 협약을 체결한 이후 기관의 명칭 변경 등 중요한 변동 사항이 발생하여도 이 협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된다(단, 대표가 변경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승계할 수 있다).

제6조(협약의 준수) 협약기관은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하고 협약서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부칙: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

2024 년 4 월 19 일



대구대학교  
특수교육·재활과학연구소



대구덕희학교

소장 박 경 옥

박경옥

교장 김 대 영

김대영